|  |  |  |
| --- | --- | --- |
| **공상행정관리 행정처벌 정보 공시 잠행규정**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71호<공상행정관리 행정처벌 정보 공시 잠행규정>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 심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국장 장마오(張茅)2014년 8월 19일**제1조** 국무원의 <등록자본 등기제도 개혁안>을 관철하고 시장 감독방식을 진일보 전환하며 시장주체에 대한 신용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에 대한 공동관리를 촉진하며 공평 경쟁의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기업정보 공시 잠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 등 법률·법규 및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제2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관한 정보는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 정보는 주로 행정처벌 결정서와 행정처벌 정보 요약을 포함한다.**제3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행정처벌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합법성, 객관성, 적시성, 규범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제4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절차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하고 행정처벌 정보 요약을 작성하여 행정처벌 결정서 앞에 첨부해야 한다. 행정처벌 정보 요약에는 행정처벌 결정서의 번호, 행정처벌 당사자 신상정보, 불법행위의 유형, 행정처벌의 내용, 행정처벌을 결정한 행정기관의 명칭과 결정 일자를 포함해야 한다.**제5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 보호법>과 기타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정보 비밀유지 심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행정처벌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국가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국가안전, 공공안전, 경제안전과 사회안정을 파괴해서는 아니된다.**제6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행정처벌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상업비밀과 연관된 내용 및 자연인의 주소지(경영장소와 일치한 경우는 제외), 연락처, 신분증 번호, 은행계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공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급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7조** 이 규정 제6조의 요구에 따라 삭제처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공시한 행정처벌 결정서는 행정처벌 당사자에게 송달한 행정처벌 결정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제8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행정처벌 결정서 송달 시 행정처벌 정보가 사회에 공시될 것임을 행정처벌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제9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법에 따라 등록·등기한 각 유형의 기업, 자영업자, 농민전문합작사 등에게 내린 행정처벌 결정의 관련 정보를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제10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서와 행정처벌 당사자의 등기기관이 동일한 성, 자치구, 직할시에 소재하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행정처벌을 결정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의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행정처벌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제11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서와 행정처벌 당사자의 등기기관이 서로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에 소재하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행정처벌을 결정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부서를 통해 행정처벌 정보를 당사자 등기기관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발송해야 하며 당사자 등기기관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정보 접수일 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행정처벌 정보를 공시한다.**제12조** 행정재심의, 행정소송 또는 기타 사유로 행정처벌 결정이 변경, 철회되었거나 행정처벌 결정의 법 위반이 확인되는 등 변경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 눈에 띄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내용에는 변경, 철회 결정 또는 행정처벌 결정의 법 위반 판정을 내린 기관의 명칭, 내용, 일자 등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제13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그가 공시한 행정처벌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제때에 이를 정정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공시한 행정처벌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를 보유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해당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정정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제14조** 공시일로부터 5년이 만료된 행정처벌 정보는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되 더 이상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보완하고 간편한 검색, 조회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대중을 위해 행정처벌 정보 검색, 조회의 편리를 제공한다.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 집행 및 사건 처리 시스템 보완을 가속화 추진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제16조** 이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행정처벌 정보를 제외한 일반 절차를 통해 내려지는 기타 행정처벌 결정에 관한 정보는 포털 사이트 또는 전문 사이트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공상행정관리부서는 포털 사이트 또는 전문 사이트 등을 통해 본 부서에서 내린 각 유형의 행정처벌 사건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제17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행정처벌 정보의 공시 직책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사건 담당자가 입력하고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행정처벌 정보 공시에 대한 내부심사 및 평가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사건처리 담당기구는 적시적이고 정확하게 행정처벌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기업 신용정보 공시업무 담당 기구는 행정처벌 정보 공시에 대한 일상 관리와 조율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제18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행정처벌 정보 공시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한 행정처벌 정보 공시의 관련 표쥰·규범과 기술요구를 제정한다.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행정처벌 정보 공시 업무를 조직, 지도, 감독하며 이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 실천과 결부시킨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제19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이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상급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제20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처벌 관련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이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제22조**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첨부 1 : 행정처벌 정보 공시문 양식<http://www.saic.gov.cn/zwgk/zyfb/zjl/xxzx/201408/W020140827583810417594.doc>첨부 2 : 행정처벌 정보 공시 고지서<http://www.saic.gov.cn/zwgk/zyfb/zjl/xxzx/201408/W020140827599232104602.doc> |  | **工商行政管理行政处罚信息公示暂行规定**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71号　　《工商行政管理行政处罚信息公示暂行规定》已经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4年10月1日起施行。 　 　局长 张茅 　 2014年8月19日 　　**第一条**　为贯彻落实国务院《注册资本登记制度改革方案》，进一步转变市场监管方式，强化市场主体信用监管，促进社会共治，维护公平竞争的市场秩序，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等法律法规及国务院有关规定,制定本规定。 　　**第二条**　工商行政管理部门适用一般程序作出行政处罚决定的相关信息应当向社会公示。公示的信息主要包括行政处罚决定书和行政处罚信息摘要。　　**第三条**　工商行政管理部门公示行政处罚信息，应当遵循合法、客观、及时、规范的原则。 　　**第四条**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严格依照《工商行政管理机关行政处罚程序规定》的相关规定制作行政处罚决定书，并制作行政处罚信息摘要附于行政处罚决定书之前。行政处罚信息摘要的内容包括：行政处罚决定书文号、行政处罚当事人基本情况、违法行为类型、行政处罚内容、作出行政处罚决定的行政机关名称和日期。 　　**第五条**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及其他法律法规的有关规定，建立健全行政处罚信息保密审查机制。公示的行政处罚信息不得泄露国家秘密，不得危及国家安全、公共安全、经济安全和社会稳定。 　　**第六条**　工商行政管理部门公示行政处罚信息，应当删除涉及商业秘密的内容以及自然人住所（与经营场所一致的除外）、通讯方式、身份证号码、银行账号等个人信息。工商行政管理部门认为需要予以公示的，应当报请上级工商行政管理部门批准。 　　**第七条**　工商行政管理部门公示的行政处罚决定书，除依照本规定第六条的要求进行删除处理的以外，内容应当与送达行政处罚当事人的行政处罚决定书一致。 　　**第八条**　在送达行政处罚决定书时，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书面告知行政处罚当事人行政处罚信息将向社会进行公示。 　　**第九条**　工商行政管理部门对依法注册登记的各类企业、个体工商户、农民专业合作社等适用一般程序作出行政处罚决定的相关信息应当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 　　**第十条**　作出行政处罚决定的工商行政管理部门和行政处罚当事人登记机关在同一省、自治区、直辖市的，作出行政处罚决定的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自作出行政处罚决定或者行政处罚决定改变之日起20个工作日内将行政处罚信息通过本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部门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进行公示。 　　**第十一条**　作出行政处罚决定的工商行政管理部门和行政处罚当事人登记机关不在同一省、自治区、直辖市的，作出行政处罚决定的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自作出行政处罚决定或者行政处罚决定改变之日起10个工作日内通过本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部门将行政处罚信息发送至当事人登记机关所在的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部门，由其协助在收到行政处罚信息之日起10个工作日内将行政处罚信息通过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进行公示。 　　**第十二条**　行政处罚决定出现因行政复议、行政诉讼或者其他原因被变更、被撤销或者被确认违法等被改变情形的，应当在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中以醒目方式进行标注。标注内容包括变更、撤销或者确认违法等决定的作出机关名称、内容、作出日期等相关信息。 　　**第十三条**　工商行政管理部门发现其公示的行政处罚信息不准确的，应当及时更正。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有证据证明工商行政管理部门公示的行政处罚信息不准确的，有权要求该工商行政管理部门予以更正。 　　**第十四条**　行政处罚信息自公示之日起届满5年的，记录于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但不再公示。 　　**第十五条**　各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按照本规定及时完善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提供操作便捷的检索、查阅方式，方便公众检索、查阅行政处罚信息。 　　各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加快完善执法办案管理系统，保证数据的准确、完整。 　　**第十六条**　除依照本规定第九条的规定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进行公示的外，其他适用一般程序作出行政处罚决定的相关信息应当通过门户网站或者专门网站等予以公示。 　　工商行政管理部门可以通过门户网站或者专门网站等公示本部门作出的各类行政处罚案件信息。 　　**第十七条**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严格履行行政处罚信息公示职责，按照“谁办案、谁录入、谁负责”的原则建立健全行政处罚信息公示内部审核和管理制度。办案机构应当及时准确录入行政处罚信息。负责企业信用信息公示工作的机构应当加强行政处罚信息公示的日常管理和协调工作。 　　**第十八条**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负责指导和监督地方工商行政管理部门行政处罚信息公示工作，制定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行政处罚信息的有关标准规范和技术要求。 　　各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部门负责组织、指导、监督辖区内各级工商行政管理部门行政处罚信息公示工作，并可以根据本规定结合工作实际制定实施细则。 　　**第十九条**　工商行政管理部门未依照本规定的有关规定履行职责的，由上一级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有关规定予以处理。 　　**第二十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申请公开行政处罚相关信息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和有关法律法规的规定办理。 　　**第二十一条**　本规定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负责解释。 　　**第二十二条**　本规定自2014年10月1日起施行。 附件一：行政处罚信息公示文书格式<http://www.saic.gov.cn/zwgk/zyfb/zjl/xxzx/201408/W020140827583810417594.doc>附件二：行政处罚信息公示告知单<http://www.saic.gov.cn/zwgk/zyfb/zjl/xxzx/201408/W020140827599232104602.doc> |